

신한중소기업주요과목투자자산익(주식)

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 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 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고 업데이트
- 5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항목	변경전	변경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23.57%이며 2등급 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은 20.43%이며 2등급 으로 분류됩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최근현황 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투자설명서 갱신 :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한해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한해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3부 1. 재무정보, 2. 연도별 실적 및 한해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최근현황 갱신 (기준일: 직전회계연도 및 2023년 07월 31일)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주식 신설>	제2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주식: 증권사의 대여/차입 거래의 목적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신설>	제2부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 기타 투자위험 증권거래 거래 위험
2.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제3부 1. 재무정보	제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주식의 신설>	제3부 1. 재무정보 가. 요약재무정보 주식: - 증권거래 거래에 따른 수수료율 또는 비용 - 주식의 매매의전환율 등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투자자산별 거래비용
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명확화.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퇴직연급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액 중후 수익증권만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급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지속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지속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	제2부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4) 퇴직연급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액 중후 수익증권만 해당)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급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A.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지속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지속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연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연부터 적용)

<p>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운용 명확화: 제2부 14. 이의해본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계속></p>	<p>-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최초로 연금계좌에 가입한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위50세 이상인 거주자는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회칙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지속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지속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 + 회칙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p> <p>B. 과세 이연 (기재생략)</p> <p>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른, 또한 연금 수령 시 시작연금액(회칙연금, 연금지속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한 과세할 내용은 회칙연금유형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 참조</p>	<p>- <삭제></p> <p>- <삭제></p> <p>B. 과세 이연 (현행과 동일)</p> <p>C.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른, 또한 연금 수령 시 시작연금액(회칙연금, 연금지속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p> <p>- <삭제>: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p>
<p>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운용 명확화: 제2부 14. 이의해본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계속></p>	<p>(5) 연금지속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지속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 (연금지속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 세액공제</p> <p>연간 연금지속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하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p> <p>다만, 종합소득금액 및 근로소득에 따라 세액공제가 여부와 같이 차등 적용된다.</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지속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하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p>	<p>(5) 연금지속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지속 종류 수익증권에만 해당) (연금지속계좌 과세 주요 사항)</p> <p>- 세액공제</p> <p>연간 연금지속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하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p> <p>- <삭제></p> <p>-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지속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하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확정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p>
<p>3.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운용 명확화: 제2부 14. 이의해본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계속></p>	<p>단,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위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지속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p> <p>-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지속계좌에 납입액 300만원 이하</p>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한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최단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p> <p>-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회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p> <p>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p> <p>※ 연금계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fplan.fss.or.kr의 「연금제도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삭제></p> <p>- <삭제></p> <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한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최단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p> <p>- 분리과세 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회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p> <p>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p> <p>※ 연금계좌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 https://100lifefplan.fss.or.kr의 「연금제도안내」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4. 운용전문인력의 운용</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가. 운용전문인력</p>	<p>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가. 운용전문인력</p>
<p>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제2부 4.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 최근현황조사 (기준일: 2023년 07월 31일)</p>
<p>4. 임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2부 4. 임합투자업자</p>	<p>제2부 4. 임합투자업자</p> <p>- 최근현황조사</p>
<p>5. 임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제4부 1. 임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가. 회사개요</p> <p>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p> <p>라. 운용자산 규모</p>	<p>제4부 1. 임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p> <p>가. 회사개요 - 최근현황조사</p> <p>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 최근현황조사</p> <p>라. 운용자산 규모 - 최근현황조사 (기준일: 2023년 07월 31일)</p>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

(1) 기재사항 변경

-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항목	개정전	개정후
1.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 갱신 : 투 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 평균수익률)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투자비용,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직전회계년도, 2023년 07월 31일)
2. 운용전문인력의 운용 규모 업데이트: 운용전문 인력	운용전문인력	운용전문인력 - 최근현황갱신 (기준일: 2023년 07월 31일)